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옥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서준오, 서호연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민석, 이병운, 이봉준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 이희원, 임만균, 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5명)

1. 제안이유

-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「청년기본법」 과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에 반영하여 위원회 청년 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- 청년인재정보 수집·관리 부서의 인재추천 사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삭제함(안 제3조제7호)
- 나.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심의·조정 하도록 함(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)

- 다. 서울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/10 이상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/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
- 라.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치도록 함(안 제10조의제4항)
- 마. 청년인재정보 수집 관리 부서가 인재추천요청을 받았을 때 협조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, 청년기본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
5.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청년친화위원회”를 “제3항에 따른 위원회”로 한다.

-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”를 “지원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“청년친화위원회”란 서울특별시</u> <u>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</u> <u>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</u> <u>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</u> <u>말하며, 개별사건을 다루거나</u> <u>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</u> <u>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</u> <u>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</u> <u>회를 제외한다.</u>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</u> <u>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</u></p> <p><신 설></p> <p>5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7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</u> <u>년 위촉 비율</u></p> <p>5. <u>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</u> <u>는 위원회의 범위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③ ~ ⑫ (생략)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③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
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
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
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

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
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

-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
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
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
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
한다.

- 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
5.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청년친화위원회”를 “제3항에 따른 위원회”로 한다.

-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”를 “지원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“청년친화위원회”란 서울특별시</u> <u>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</u> <u>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</u> <u>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</u> <u>말하며, 개별사건을 다루거나</u> <u>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</u> <u>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</u> <u>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</u> <u>회를 제외한다.</u>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</u> <u>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</u></p> <p><신 설></p> <p>5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7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</u> <u>년 위촉 비율</u></p> <p>5. <u>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</u> <u>는 위원회의 범위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③ ~ ⑫ (생략)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③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 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 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 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-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

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

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제2항제5호 및 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비율 및 위촉 제외, 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제4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